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77
----------	-----

발의연월일 : 2020. 6. 23.

발 의 자 : 박대수 · 김석기 · 김성원
임이자 · 윤영석 · 김용판
지성호 · 김형동 · 김예지
이태규 · 조수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사업주 등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2008년 이천 냉동물류 창고 화재사고와 유사한 대형 화재사고가 최근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다시 발생해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재·폭발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작업의 도급 금지 및 도급인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함.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항제5호, 제38조의2, 제58조제1항제4호, 제76조의2, 제168조제3호·제4호 신설 및 제169조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화재위험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제38조제3항제5호에 해당

하는 장소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체재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건축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작업

제5장제3절에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화재위험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화재 및 폭발 등에 취약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8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4. 제43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69조제1호 중 “제81조”를 “제76조의2, 제81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신설>

② ~ ⑧ (생략)

<신설>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작업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화재위험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화재 및 폭발 등에 취약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신설>

<신설>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 후단, 제63조, 제76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제139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 6. (생략)

야 한다.

제168조(벌칙) -----

-----.

1. 2. (현행과 같음)

3.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4. 제43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69조(벌칙) -----

-----.

1. -----
-----제76조의2, 제81조-----

2. ~ 6. (현행과 같음)